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지역경제과-7649 |
| 등록일자 | 2016.2.25. |
| 결재일자 | 2016.2.25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|

| 주무관 | 소비자보호팀장 | 지역경제과장 | 기획경제국장          |  |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장유나 | 김선희     | 권승원    | 전결 02/25<br>김용운 |  |  |
| 협조자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
##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검토 보고서



2016. 02. .

강 남 구  
(지 역 경 제 과)

#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검토 보고서

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강남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접수된 시설의 시설기준과 현장 확인을 검토한 바 적정하기에 지정하고자 함.

## I 관 련

「유기동물 보호관리」 위탁 운영 계획(지역경제과-1709, 2016.01.14)

## II 관 련 법 규

-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별표 4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별표 5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3조(동물보호 및 관리)

## III 접 수 현 황

### 일 정

- 모집공고 : 2016. 1. 18 ~ 1. 27(10일간)
- 접수기간 : 2016. 1. 28 ~ 1. 29(2일간)
  - ※ 평가위원회 구성 : 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
- 위탁 기간 : 2016. 3. 1 ~ 2019. 2. 28(3년간)

접수 결과 지정 신청 업체 : 1개소

| 기 관 명         | 성명(대표자) |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|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| 김철훈     |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로 63-37(남면 상수리) | 031-867-9119<br>031-865-2548 | 비영리법인 |

# IV

## 검 토 결 과

■ 서류 검토 : 적합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에 의한 시설기준)

■ 점검 사항

| 점 검 사 항  | 점검결과 |     |      |
|--|------|-----|------|
|  | 예    | 아니오 | 해당없음 |
| <b>I. 시설기준(일반기준)</b>   |      |     |      |
| 가. 진료실, 사육실,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.  | ○    |     |      |
| 나.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,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법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   | ○    |     |      |
| 다.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. 다만, 운동장은 제외한다.  | ○    |     |      |
| 라.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.  | ○    |     |      |
| 마.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  | ○    |     |      |
| <b>II. 시설기준(개별기준)</b>  |      |     |      |
| 가. 진료실에는 진료대,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·장비를 갖추어야 하며,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 | ○    |     |      |
| 나.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<br>1)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,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br>2)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,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  | ○    |     |      |
| 다.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<br>1) 독립된 건물이거나,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<br>2)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,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,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.<br>3)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,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<br>4)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○    |     |      |
| 라.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,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   |      |     |      |

|  |   |  |  |
|--|---|--|--|
| 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   |   |  |  |
| <p>마. 진료실,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)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,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.</p> <p>가) 소형견(5kg 미만): 50 × 70 × 60(cm)</p> <p>나) 중형견(5kg 이상 15kg 미만): 70 × 100 × 80(cm)</p> <p>다) 대형견(15kg 이상): 100 × 150 × 100(cm)</p> <p>라) 고양이: 50 × 70 × 60(cm)</p> <p>2)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.</p> <p>3) 시설의 재질은 청소,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,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4)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,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5)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.</p> | ○ |  |  |
| <p>바.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</p>  | ○ |  |  |

■ 현장 검토 : 적합

- 현장 방문 일시 : 2016. 2. 24(수) 11:00
- 현장 방문자 : 수의7급 장유나, 행정9급 서수연
- ※ 첨부파일의 용량제한 관계로 현장 사진은 보고서 하단에 첨부

■ 객관적(정량적) 평가 :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| 연번 | 신청기관<br>(단체)명  | ① 시설 및<br>장비능력(35점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인력평가(15점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가산점<br>(0.6점) | 총점<br>(50점)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| 동물보호시설<br>(사육실)상태<br>및 능력<br>(25점) | 동물구조<br>차량<br>확보상태<br>(10점) | 구조인력<br>(5점) | 관리인력<br>(동물보호<br>사무관리)<br>(5점) | 상근수의<br>사(5점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1  | 사)동물구조<br>관리협회 |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| 0             | 50          |

- 동물보호실 면적 : 681.59㎡으로 기준면적 15.219㎡의 130%이상 확보
- 동물구조 차량 확보 : 6대 이상 보유(냉방별도)
- 2년이상 구조 인력 : 6명

- 관리 인력(동물보호, 사무관리) : 5명
- 상근수의사 : 1명

■ 주관적(정성적) 평가 : 평가 생략

- 신청업체가 1개소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생략 및 객관적(정량적) 평가만 수행

붙임 현장사진 1부. 끝.

(현장사진) 2016.02.24



사무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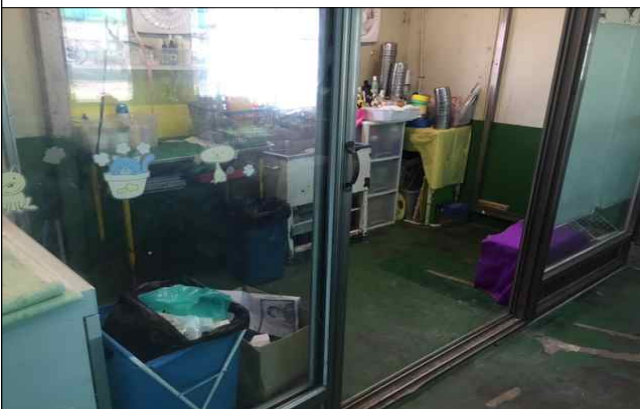
고양이 포획틀



개 포획틀 및 고양이 재활 관리 치료실



동물병원입구



미용실



동물병원 내 입원장

